



[등록번호 : 20080200186] [www.morningglory.co.kr]
[최초등록일 : 2008. 9. 9] [iljime73@morningglory.co.kr]
[최종등록일 : 2026. 2. 24]

모닝글로리 정 보 공 개 서

[(주)모닝글로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6년 월 일

(주)모닝글로리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 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 주소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장안로 781-55
(가맹본부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160 모닝글로리빌딩)
[대표전화:02)719-0400/ 팩스번호 : 02-2179-0319]
[담당자: 02) 2179-0350]

목 차

I .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4
II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9
III .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21
IV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22
V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29
VI .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45
VII .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46
VIII .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48
IX.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50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사용브랜드		주 소			
(주) 모닝글로리	모닝글로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장안로 781-55			
	설립일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981.1.21	1981.1.21	1981.05.01	송익현	02)719-0400	02)2179-0319
	법인등록번호	110111-0287923		사업자등록번호	105-81-63968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이사	민병헌	모닝글로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장안로 781-55		
	사업(경영) 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3년		송익현	02) 719-0400	02) 2179-0319
이사	한중석	모닝글로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장안로 781-55		
	사업(경영) 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3년		송익현	02) 719-0400	02) 2179-0319
감사	김제상	모닝글로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장안로 781-55		
	사업(경영) 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3년		송익현	02) 719-0400	02) 2179-0319
이사	박영생	모닝글로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장안로 781-55		
	사업(경영) 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3년		송익현	02) 719-0400	02) 2179-0319
사외이사	한동우	모닝글로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장안로 781-55		
	사업(경영) 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3년		송익현	02) 719-0400	02) 2179-0319
대표이사	송익현	모닝글로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장안로 781-55		
	사업(경영) 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3년		송익현	02)719-0400	02) 2179-0319

3. 가맹본부의 인수, 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 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기업에 인수, 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모닝글로리]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설명
명칭	모닝글로리	“아침의 영광이라는 뜻”
상호	모닝글로리 00점	
상표(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316353호,1712623호
광고	bluebear, babu	
그 밖의 영업표지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VAT미포함)

기수(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43기	51,733,429	25,752,890	25,980,536	42,898,504	611,901	287,618
44기	49,508,200	24,247,047	25,261,153	40,713,952	-488,469	-496,987
45기	48,647,643	24,038,946	24,608,697	38,133,848	-769,607	-652,456

- * 43기 : 2022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 / * 44기 :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 * 45기 : 2024년 7월 1일 ~ 2025년 6월 30일
- * 별첨 [사업년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본]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송익현	대표이사	2023.9 - 현재	대표이사	총괄
	한중석	이사	2006.5 - 현재	이사	경영의사 결정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민병현	이사	2006.2 - 현재	이사	경영의사 결정
	김제상	감사	2006.5 - 현재	감사	감사업무
	박영생	이사	2007.9 - 현재	이사	경영의사 결정
	한동우	사외이사	2025.9 - 현재	이사	경영의사 결정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5년 6월 30일	2	4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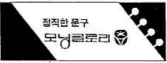
* 원천징수이행신고서상 등록된 임직원수 / * 임원 및 직영점 직원이 포함된 수임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해당사항 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 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모닝글로리 	영업표지 사용	출원 1993.6.21	출원 제4119930003435	이미재	2035.3.24. (2026.12.31.)
		등록 1995.3.24	등록 제4100265100000		

*** 본 지식재산권은 상표권자로부터 그 사용의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적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모닝글로리] 가맹사업 현황

1. [모닝글로리] 시작하는 날 : 1996년 1월 7일

2. [모닝글로리]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모닝글로리	모닝글로리	황귀선	1992.11.24~2003.6.26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장안로 781-55
		황귀선,표태선	1997.7.1~2003.6.26	
		김희옥	2003.6.26~2004.9.21	
		이종선	2004.9.21~2004.12.31	
		허상일	2004.12.31~2023.9.19	
		한동인,송익현	2023.09.19.~2025.09.23	
		송익현	2025.09.24.~ 현재	

3. [모닝글로리] 업종

영업표지	업종	
모닝글로리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도소매	문구,팬시,사무,전산,잡화,기타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말 영업중인[모닝글로리]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 개)

지역	43기(2022.7.1~2023.6.30)			44기(2023.7.1~2024.6.30)			45기(2024.7.1.~2025.6.30)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81	276	5	262	258	4	246	242	4
서울	83	79	4	76	73	3	71	68	3
부산	17	17		16	16		16	16	
대구	1	1		1	1		1	1	
인천	25	25		24	24		21	21	

광주	2	2		0	0		0	0	
대전	6	6		5	5		5	5	
울산	2	2		2	2		2	2	
세종	2	2		2	2		2	2	
경기	81	80	1	78	77	1	71	70	1
강원	14	14		12	12		11	11	
충북	2	2		2	2		2	2	
충남	5	5		4	4		4	4	
전북	9	9		10	10		10	10	
전남	7	7		7	7		7	7	
경북	4	4		4	4		3	3	
경남	17	17		16	16		16	16	
제주	4	4		3	3		4	4	

5. 바로 전 3년간 [모닝글로리] 가맹점 수

(단위 : 개)

사업기수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43기	284	18	0	26	6	276
44기	276	10	0	28	3	258
45기	258	4	0	20	4	242

- * 계약해지(가맹점사업자의 개인사유로 폐업도 포함됩니다)
- * 모닝글로리 사업연도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년도 6월 30일 기준입니다.
- * 모닝글로리 직영매장을 제외한 매장수입니다.
- * 가맹점의 자세한 내용은 www.morningglory.co.kr 에서 매장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모닝글로리]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제외)과 그 산정기준

[모닝글로리]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말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5년 6월말 가맹점수	45기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평균매출액		연간평균매출액		연간평균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당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242	203,940	5,539	4,102,797	314,116	600	30	확인가능한 197개 매장 기준
서울	68	254,245	7,032	4,083,520	314,116	11,323	566	52개매장기준
부산	16	270,490	5,395	972,302	23,125	32,507	1,161	15개 매장 기준
대구	1							5곳미만
인천	21	162,342	5,774	822,707	27,424	9,614	641	17개 매장 기준
광주	0							5곳미만
대전	5	123,860	2,554	264,048	7,686	40,642	1,760	4개 매장 기준
울산	2							5곳미만
세종	2							5곳미만
경기	70	186,928	6,879	4,102,976	68,383	6,257	395	58개매장기준
강원	11	70,433	1,682	158,958	7,948	600	30	7개 매장 기준
충북	2							5곳미만
충남	4							5곳미만
전북	10	124,552	2,663	207,470	13,862	32,446	1,037	9개 매장 기준
전남	7	352,436	8,363	931,355	15,667	27,224	1,361	7개 매장 기준
경북	3							5곳미만
경남	16	184,468	3,438	1,072,314	8,002	21,402	1,128	14개 매장 기준
제주	4							5곳미만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매출추정액 = 당사의 영업소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공급액 ÷ 0.15 ÷ 0.6]

[당사가 전산상 확인할 수 있는 매장 공급액에 매장별 자사 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평균 15%로 추정하였으며, 평균 마진을 40%로 계산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사업년도 마감 6월 30일자 기준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본사로부터 주문실적이 6개월 미만인 매장은 제외 하였으며, 거래하지 않은 매장도 제외하였습니다.

* 차지하는 비율(15%)은 개별 점포에 따라 매우 상이 할수 있으며, 개별 점포가 할인 판매할 경우 평균마진율(40%)은 매장별로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추정산식은 정상판매를 기준으로 평균마진율 40% 적용) 또한, 실제 영업개월수가 부족한 매장은 문구업 특수성(시즌/비시즌 차이가 매우 큼)을 고려하여 1년치로 환산하지 아니하고, 실제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매출만을 포함하여 실제 보다 추정금액이 작아질 수 있으나 참고바랍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모닝글로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모닝글로리]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모닝글로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①	평균 영업기간 ^②
45기(2024.7.1.~25.6.30)	242	4,308

* 평균영업기간은 비공식매장 3개매장은 제외(서면,창신,외도점)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정보

당사는 [모닝글로리]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서울(강남,송파,강동,서초) 경기(성남,하남,광주)	수도권동부영소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 333번길 35(창우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가맹점수	
	한동인, 송익현	031)794-3765	30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직영영업소	○	×	×
서울(동작,관악,서초) 경기(의왕,과천,군포,안양,	수도권남부영소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723-7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가맹점수	

수원,평택,오산,용인,안성, 화성,안산,천안,아산	한동인, 송익현	031)357-2422		34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직영영업소	○	×	×
서울(용산,마포,은평,서대문 양천,강서,영등포) 경기(고양,파주)	수도권북부영업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노침길 36번길 51(장항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가맹점수
	한동인, 송익현	031)908-0833		26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직영영업소	○	×	×
서울(구로,금천) 경기(부천,김포,광명,시흥) 인천지역	수도권서부영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89번길 18-1(원창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가맹점수
	한동인, 송익현	032)578-7172		35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직영영업소	○	×	×
대전/세종지역 충북(청주,옥천,영동군) 충남(공주,부여,서산,당진) 경북(상주,문경)	대전영업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북용로 16-9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가맹점수
	한동인, 송익현	042)535-8869		9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직영영업소	○	×	×
전북지역 충남(보령시,서천군)	전주영업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외원당길 3(대성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가맹점수
	한동인, 송익현	063)222-8345		11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직영영업소	○	×	×
경남지역	진주영업소	경남 진주시 금산면 송백로 14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가맹점수
	한동인, 송익현	055)763-9123		15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직영영업소	○	×	×
부산지역 경남(김해,창원,마산,진해)	부산영업소	부산시 강서구 경전철로 213-1(대저2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가맹점수
	한동인, 송익현	051)303-1512		14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직영영업소	○	×	×
강원도지역 경기(이천,여주,가평,양평) 충북(충주,제천,진천,음성) 경북(울진군)	강원영업소	강원도 원주시 지니기길 41-24 가동(무실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가맹점수
	한동인, 송익현	033)764-2570		17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직영영업소	○	×	×
서울(종로,중구,동대문구,성동 광진,중랑,성북 경기(구리시)	중부대리점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116번길 20번지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가맹점수
	민병현	031)529-3383		18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05.7.1~미정	○	×	×
서울(강북,도봉,노원) 경기(의정부,동두천,남양주 양주,포천,연천,철원)	북부대리점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357-2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가맹점수	
	송혁섭	031)543-3246	14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05.7.1~미정	○	×	×
대구지역 경북(상주,문경제외)	대구대리점	대구시 서구 와룡로 407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가맹점수	
	박상훈	053)554-7115	1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05.7.1~미정	○	×	×
광주시 전남(목포,나주,담양,화순 장흥,강진,해남,영암,무안,함 평 영광,장성,완도,진도,신안)	광주대리점	광주시 서구 내방로 343번길 19 금호하이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가맹점수	
	김필수	062)369-0333	1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05.7.1~미정	○	×	×
전남(여수,순천,광양,곡성, 구례,고흥,보성군)	순천대리점	전남시 순천시 환선로 110(석현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가맹점수	
	박상연	061)745-0668	6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05.7.1~미정	○	×	×
울산시 경북(포항,경주,영덕,울릉군) 경남(양산시) 부산(기장,수영,해운대)	울산영업소	울산시 북구 고현로 100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가맹점수	
	한동인, 송익현	052)297-3720	7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직영영업소	○	×	×
제주지역	제주대리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평8길 9(오라이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가맹점수	
	박경란	064)723-9890	4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직영영업소	○	×	×

* 2025년 6월말 기준

10. 광고, 판촉 지출내역

당사에서 [45기]에 [모닝글로리]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와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35]쪽을 참고하십시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분	수단	기간	지출비용(단위:천원, 부가세미포함)			비 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비공개)	397,435	(비공개)		
광고 선전비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 귀사는 제조를 하고 있어 가맹사업외 제품에 대한 광고, 판촉비가 포함되어 있음.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신한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부서	주소	전화번호
(주) 신한은행	가맹금예치팀	공덕금융센터	02-701-5540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신한은행]에 [계약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 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신한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 모닝글로리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금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조정,중재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 없음]

III.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모닝글로리]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의 걸리는 시간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하는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가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다른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총계	3,300				
가맹비	3,300	계약후 20일 이내	소멸성	가맹사업 착수를 위한 대가	

* 가맹금의 반환은 가맹계약서15조의 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사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없음)

구분	금액	지급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 고
----	----	------	--------------	-----

보증금 (현금)	2,000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이후	자사 영업처 미수금 미처리 경우	해결시까지 지급거절
			자사 C.I 영업표지(간판) 미철거시	상동
			자사이미지 훼손하는 행위적발시 3일 이내 시정조치 안될 경우	보증금 50% 공제
			자사이미지 훼손하는 행위적발시 7일 이내 시정조치 안될 경우	100%공제
			계약기간내 동종업종 상호변경시, 당사 서면동의 없이 양도양수 진행시	상동
			가맹계약서 제30조 2항(영업의 상속)	상동

* 자사이미지 훼손하는 행위 적용범위: 본사 서면 동의 없이 자사 간판 유지한 상태로 다른 업종(경쟁 및 동종업종 영업행위) 판매등을 통하여 본사 브랜드이미지 훼손하는 행위.

* “을”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을”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단, 상속인이 영업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갑”에 승계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승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본 계약은 사망일로 소급하여 종료하며, 계약이행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아래 와 같습니다.

구 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 계	5,300
가맹비	3,300
보증금	2,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23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 실 20평 기준,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 ² 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57,500	2,875			
인테리어 (점포내장공사)	협력업체 또는 자율	18,000	900	공사전 50% 완료후 50%	공사착공전 계약해지시	천장,바닥 시공별도
간판 (필수설비)	협력업체 또는 자율	2,500	125	공사전 50% 완료후 50%	설치 전 계약해지시	
최초 공급상품 비용	협력업체	12,000	600	물품공급 당일지급	불량제품에 한함	최소
	협력업체	20,000	1,000	물품공급 당일지급	불량제품에 한함	최소
기타 제반시설 (포스,키오스크) (냉난방기등 기타)	자율	5,000	250	가맹사업자의 의사에 따름	가맹점사업자 의사에 따름	자율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담당자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파악 ⇒ 상권조사 및 손익분석 ⇒ 사업성검토 및 상담진행 ⇒

	본사 진행시 ⇒ 최종가맹희망자 진행여부 결정
모닝글로리 (가맹점팀 담당) 02-2179-0350	가맹희망자 선호지역 상권정보 전달 ⇒ 가맹희망자 직접방문 가맹의사 표명시 위 절차 동일하게 진행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 본사 및 협력업체에 대한 전반적 내용. - 가맹본부의 정책사항 준수. - 당사와 함께할 적극적이고 절대적 신용이 있으신 분.	-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 가맹점 운영능력 및 운영자금의 소유자
종업원	- 매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 내용 - 고객응대 및 서비스교육	- 가맹점사업자 판단에 의거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모닝글로리]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는 당사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내용이며, 운영중 추가부담의 경우가 발생시 사전 개별매장과 협의 하에 진행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로열티						해당없음
POS 및 키오스크 사용료						해당없음
판촉분담금						해당없음
광고분담금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협력업체	점주판단 개별시공 허용	업체협의	업체협의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기기 등의 내구연수등을 감안하여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 개선비용						해당없음
지연이자	당사	연 12%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최초가맹금 및 물품대금의 지급기한 경과시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 0 2 4 . 0 7 . 1 . ~ 2 0 2 5 . 0 6 . 3 0 .) 년 도 평 균 규 모 는 다 음 과 같 습 니 다 .

구분 (기준 : 2024,07,01~2025.06,30)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없음

★ 자체생산 및 적정도매가격이하 가격으로 공급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신상품 취급여부, 결품상품 확인.	상시	문의: 가맹사업팀 (02-2179-0350)
매출관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대비 자사 상품매입 비중 관리.	상시	문의: 가맹사업팀 (02-2179-0350)
서비스,위생,품질.	불량식품 취급여부, 사행성오락기 설치여부, 매장 청결상태, 자점매입상품의 품질등	상시	문의: 가맹사업팀 (02-2179-0350)

3. 계약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부담 비용이 없습니다. 향후 계약 종료시점이후 계약내용 또는 부담비용 발생시 이에 대한 적용을 받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 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를 유지할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하는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또한, 대체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가 해지를 원할 경우 미수금 정산이후 보증금을 돌려드립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가맹점 사업자가 해지를 원할 경우 미수금 정산이후 보증금을 돌려드립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모닝글로리]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주)모닝글로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도인은 가맹점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서면동의를 반드시 구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 서면 동의 없이 양도양수 진행시 가맹보증금 반환을 거절당합니다.

당사가 서면 동의를 할 경우에는 양수인은 가맹보증금(200만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도자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 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모닝글로리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3 ~ 7일 이내에 별다른 조치가 안이루어 질 경우에는 가맹보증금 지급이 거절당하며 그 외에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주) 모닝글로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모닝글로리]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나) 주요 품목별 직전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가맹사업의 내용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상 “소매업”에 해당하여 작성을 생략함.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모닝글로리]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모닝글로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모닝글로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모닝글로리 상품 (위탁 및 아웃소싱)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당사가 공급하는 모닝상품과 중복되는 상품류를 기준으로 하여 타경쟁사 상품등을 자사상품 보다 과도하게 매입하여 가맹점으로서 최소한의 이미지유지가 어려운 경우와 동일 상품군 자사상품 진열량 보다 경쟁사 상품 진열량이 많은 경우.	1회 위반: 구두경고 2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3회 위반: 계약해지	결품상품 제외
사행성 오락기계, 저급 불량식품외	취급 불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외에 다른 판매 제한을 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초등학생 및 저학년층	불량식품 및 유통기한이 초과한 식품류, 담배, 사형성오락기등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수 없음.	1회 위반: 구두경고	
일반소비자	장물 및 유통기한이 초과된 유통상품들		2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3회 위반: 계약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용역명	권장가격(단위: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모닝글로리 공급상품	모닝글로리 상품에 표시된 소비자가격	자사상품에 표시됨	일부품목 제외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문구,팬시, 사무용품등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모닝글로리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직선반경 500m 단, 특수상권(철도역사, 지하철내매장, 백화점, 할인점, 아울렛매장,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8차선도로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가맹계약서 제 12조 제 1항 계약서 별지에 직선거리 500m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모닝글로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영업소 또는 대리점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동일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일반소매점	개별 상이함	모닝글로리 상품(문구)	영업표지 제약
할인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모닝글로리 일부상품	품목 제약
기타	일부 도매상	모닝글로리 상품(문구)	품목 제약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주)텐바이텐 11번가 1300K Akmall BC페이북쇼핑 ESM옥션 ESM지마켓 e-제너두 SK플래닛 교보핫트랙스 기프트로드 나비엠알오 도매꾹 롯데온 무신사 베네피아 비즈마켓 몰플렉스 삼성카드주식회사 스마트스토어 신세계몰 에스제이트렌드 에스케이엠엔서비스주식회사 에스24주식회사 오너클랜 오피스메카 위메프 인터파크비즈마켓 카카오커머스 쿠팡 테크빌교육 티몬 판촉사랑 피알글로벌 현대이지웰 홈&쇼핑 알리익스프레스 LG라이프케어	모닝글로리 상품	없음.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45기	55%	39%	0.2%	5.9%

* 45기 : 2024.07.01.~2025.06.3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 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45기	-	-

* 45기 : 2024.07.01.~2025.06.30. / 아웃소싱품목제외. / 직영점과 가맹점 판매상품이 동일하여 0%임.

소매업중심 유통으로 직영점,가맹점상품이 동일하며, 온라인 전용상품이 없음/해당사항 없음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모닝글로리]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며, 가맹 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 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 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 →②, 아니오→⑦	D-180~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D-180~D-90

예 →④, 아니오→③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 →⑤, 아니오→A	D-180~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 →B, 아니오→A	① +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동에 동의하였습니까? 예 →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 →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 →B, 아니오→⑧	D-180~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 →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변경을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1조 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 1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31조 1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1조 1항
◆ [모닝글로리]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1조 1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 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1조 1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온,오프라인상 소비자클레임이 년 5회 이상 제기되는 경우, 단 “을”의 귀책사유 확인후 “을”의 과실이 과한 경우에 한함.	제32조 6항
◆ 가맹본부의 신상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제32조 6항
◆ 매장내 판매중인 상품들중 동일 품목군 기준 가맹본부가 제공한 상품보다 가맹점사업자가 자체 매입한 상품 보유량이 현저히 많아 가맹점으로서의 역할이 어려운 상태.	제32조 6항
◆ 노후 또는 미관상 좋지 않은 점포설비나 점포외관에 대하여는 그 교체나, 보수 또는 청소등 가맹본부의 정당한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32조 6항
◆ 가맹점사업자의 매장매출 및 수익률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가맹본부의 영업처 상품 매입량이 가맹점사업자의 매장 인건비, 관리비 및 임차보증금등 합리적인 손익분석자료를 충분히 고려하고도 가맹본부의 상품 점유율 및 재고율이 현저히 낮아 가맹본부의 상품을 판매하는 가맹점으로서 역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2조 6항
◆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장 이전시 “갑”이 사전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제32조 6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않은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 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계약 즉시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 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2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제32조 2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2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32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한다.	제32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 14조 제 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 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2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32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32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32조 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해당사항 없음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작성 ⇒ 가맹점사업자 에게 서면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수정완료	수정계약서(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

*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기존 계약서 유지.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서면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양수인 면담포함, 30일 가량소요) ⇒ 승인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 양도 계약체결(5일소요)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가맹사업 (02-2179-0350)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
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 할 경우
당사는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 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
년후계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내부절차	보증금 승계
사망	본부 승인시 가능	상동	내부절차	보증금 승계
대리행사	상동	상동	내부절차	보증금 승계
업무위탁	불가능			

내부절차 : 가맹계약서 제30조 2항에 의거 귀하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귀하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나 단, 상속인이 영업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에 승계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위 기간내에 승계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함과 동시에 계약행보증금은 가맹본부에 귀속됨.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영업지역내에서] 귀하가 [모닝글로리]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모닝글로리의 서면 허가없이 자기또는 제3자의 명의로 동일지역 내에서 갑의 영업과 동일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동일업종으로 일반인에게 문구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동종업종 경쟁브랜드 영업행위	가맹점사업자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및 기안결재 포함, 30일이상 소요) → 허가여부 통지 → 완료	문의:가맹담당 02)2179-0350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9항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1차 담당팀	2차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방문→청결도 확인 →관리표작성→가맹점사업자확인 및 서명 → 완료	상시	영업사원	본사 가맹담당자	
자사상품 D/P 및 점유율	담당자 매장방문→자사상품 D/P 점유율 확인→ 관리표작성 →가맹점사업자 확인및서명 →완료	상시	상동	상동	
친절도	소비자클레임 접수시	상동	상동	상동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 및 판촉활동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가맹점사업자가 원할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개점시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에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 분	지원금액	디자인 작업	비 고
지하철 광고	비용의 50%	당사 홍보실	지원금액 한도 100만원
버스광고	상동	당사 홍보실	상동
기타	미정	당사 홍보실	상동

* 위 부담비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에 조정할수 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실평수 20평 기준, 천원, 부가세포함)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D 39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응대	즉시	START (S)	
사업설명 ·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즉시	S+1(2)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의사결정, 1차 시장조사 - 입지 지역분석 및 확정	필요시 [필수]		
최종 협의	- 가맹점 개설 승인 - 가맹계약서 제공	최소 3일이상	S+4(5)	
가맹계약 체결	- 가맹 계약 체결 - 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정보공개서 제공후 14일이후	S+16	
가맹금 예치	-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계약체결 후3일이내	S+19	23p 참조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4일	S+20(21)	24p참조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최소 3일	S+24(25)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7일~10일	S+34	
교육실시	- 점포 운영교육 실시	3일	S+25~27	
상품공급등	- 상품공급 및 진열	3일	S+37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1일	S+39(40)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과정에

서 임차조건 및 내부 시설 도면 및 견적서 관련 상담기간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시, 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점포환경개선 및 리뉴얼은 가맹점 사업자의 자발적인 요청이 있을시에 만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으로 진행하며, 그 이외 강제적인 점포환경개선은 없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 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 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지원	폴리백, 앞치마, 명함 등 개점물품	오픈점	오픈후 1회	40만원 한도	지원품목은 변동될 수 있음
행사상품	이벤트상품	오픈점	상시	한도없음	본사재고활용(재고 수량에 한함)
도색지원	배송차량 도색	오픈점	계약기간 1회	본사부담	최대100만원
광고	버스, 지하철광고	오픈점	계약기간 1회	50% 부담	최대100만원

3. 경영활동 자문

해당사항 없음. 단, 가맹점사업자 요청시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으로 외주업체 위탁 지원 알선. 가맹본부 요청 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후 분담하여 진행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모닝글로리]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신용명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 형태	신용제공 조건
프랜차이즈론	신한은행	최대 5천만원	신용, 담보 대출	신한은행을 통해 확인.

[구체적인 신용제공 조건은 귀하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지원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상담하기 바랍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①	주요 내용 ^②	지원조건 ^③	지원기간	지원내용 ^④	비고 ^⑤
행사지원	가맹점 오픈 및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희망 가맹점	오픈일로부터 1년간	행사상품 원가지원	소 가 대 비 20%출고
매출부진 경영지원	매출부진 가맹점 판매 촉진을 위한경영지원	희망 가맹점	가맹계약기간	경영 컨설팅 제공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 내용

[당사는 모닝글로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교육	매장운영 노하우 소비자응대 제품별 안내 포스작동법 거래처관리 재고관리등	매장실습 및 현장교육	정식오픈 이전	자율 판단 (권장 및 선택)
양성화교육			계약체결이후 1개월이내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준비 하고 있으며,전적으로 귀하의 개인적인 사정(업종 유경험자,지리적 여건등등)에 의하여 본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이와 관련한 페널티등의 사항은 없습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모닝글로리]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천원)	비고
신규교육	자율	필요시 협의진행	장소 : 직영매장 개점매장
양성화교육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와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거나 그 기간 및 장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당사는 신규 개점하는 신청자 또는 기존 문구점을 운영하는 점주의 경우 본인 자율적 판단하에 교육, 훈련 불참시 본사가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①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중앙대점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흑석동) 310관 B406호
2	서울	고려대점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145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중앙광장110호
3	서울	홍대점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160(서교동) 1층
4	경기	성균관대점	경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천천동)04B03호 / 복지회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②

(단위 : 년, 개월)

45기(2024.07.01.~2025.06.30.)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9년 5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45기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③
221,437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 (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45기 기준 : 2024.07.01.~2025.06.30.

[정보공개서 내용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점팀(02-2179-035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 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02-2023-4010) 또는 가맹유통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 가맹점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인접 가맹점사업자 현황

● 재무현황 전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